

의안번호	2205038
의 퇴 인	박대출 의원
회 답 일	2024.11.13.
추계번호	24C464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7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4항)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 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7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광역지방자치단체별 1개 이상의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규정
-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이 설치기준을 갖추고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총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음

[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현황

구분	수도권(15개교)	지방권(10개교)
국·공립대	강원대(40), 서울대(150), 서울시립대(50)	경북대(120), 부산대(120), 전남대(120), 전북대(80), 제주대(40), 충남대(100), 충북대(70)
사립대	건국대(40), 경희대(60), 고려대(120), 서강대(40), 성균관대(120), 아주대(50), 연세대(120), 이화여대(100), 인하대(50), 중앙대(50), 한국외대(50), 한양대(100)	동아대(80), 영남대(70), 원광대(60)

주: () 숫자는 각 학교 입학정원임
자료: 로스쿨인사이드(2024.8.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개정안이 시행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공립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경우 인건비, 시설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신설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주체 및 입학정원, 시설 규모 등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광역지방자치체인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립 또는 공립일 경우 교직원 등의 인건비¹⁾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시설비²⁾ 등에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설립될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및 설립주체(국공립 또는 사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재정지출의 규모에 대한 추정이 곤란함
 -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 또한 총 입학정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
 - －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총 2,000명으로, 현재 기설립·운영 중인 학교들에 나누어져있는 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①전체 정원 조정, ②기존 정원의 학교별 재배분, ③매년 발생하는 결원인원을 정원으로 인정 등의 방식에 따라 총 정원 또는 학교별 정원이 변경될 것으로 보이나 현시점에서는 이에 대한 예측이 곤란함³⁾
 - －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국·공립으로 설립될 경우 인건비 및 시설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될 수 있으나⁴⁾, 설립주체에 대한 예측이 곤란하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가정이 곤란함⁵⁾

1) 전임·겸임교원과 조교, 행정실 직원 등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물적 기준) ①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3) 이에 정원과 연계되는 교원, 조교 등과 시설비에 대한 추정이 곤란

4)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비용증가분에서 등록금수입을 차감하여 산출되는 값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국공립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이 조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존 재정소요를 추가로 차감하여 산출될 수 있음

5) 2024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지 않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국·공립대학이 없고 소재한 2개 대학은 대전가톨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이나 전자의 경우 신학과만 개설되어 있고, 고려대학교의 경우 서울에 이미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이 배정되어 있어 정원 배분에 대한 가정이 곤란함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